

의안번호	2219752
의 퇴 인	권향엽 의원
회 답 일	2026. 9. 1.
추계번호	26A2922

대 ·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제2항제5호 (대·중소기업·농어업 협력재단의 설립)	○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(제2항) - ㄴ 5.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예방,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 *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사업 추가 - (현행)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- (개정안)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예방, 피해구제 지원 추가	의무규정
2	안 제20조의5 신설 (대·중소기업 분쟁조정 원의 설치 및 업무)	○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, 중소기업 상호 간 분쟁의 예방,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 대·중소기업 분쟁조정원(이하 “조정원”이라 한다)을 둔(제1항) ○ 조정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2항) - 1.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- 2.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운영 지원 - 3.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 운영 지원 - 4.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분쟁의 조정 - 5.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·컨설팅 등 - 6. 분쟁 상담 및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지원 - 7. 분쟁 사례 발굴·분석 및 제도개선 건의 - 8. 그 밖에 분쟁의 예방,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○ 정부는 조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·재량 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0조제2항제5호 (대·중소기업·농어업 협력재단의 설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0조의5 신설 (대·중소기업 분쟁조 정원의 설치 및 업무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함)의 사업에 위탁·수탁기업 간 분쟁의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을 추가하고, 재단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, 중소기업 상호 간 분쟁의 예방,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·중소기업 분쟁조정원(이하 “조정원”이라 함)을 두도록 하는 한편, 정부로 하여금 조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
- 개정안의 시행으로 재단에 위탁·수탁기업 간 분쟁의 예방,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조정원이 설치되고, 정부가 조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에 따라 재단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¹⁾

1)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) ① 정부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1. 대·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
 2.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·운영 및 평가 지원
 3.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

- 중소벤처기업부는 「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」 사업의 내역사업인 '기업간 거래공정화'를 통해 수·위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·위탁기업 분쟁조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,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40억 6,900만원임

[표 1] 개정안 관련 재정사업 현황: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-내역사업 (회계, 코드)	내용	사업시행주체 (사업시행방법)	예산
			2026년
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- 상생거래 환경조성 (일반회계, 4231-301)	(기업간 거래공정화) 수·위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·위탁기업 분쟁조정 지원	대·중소기업· 농어업협력재단 (보조)	4,069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,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조정원의 설치·운영 규모와 조정원이 수행할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조정원의 운영계획 및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개정안의 시행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과 관련한 재단의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시점에서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- 또한, 개정안은 재단에 조정원을 설치하고 정부가 조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현시점에서 조정원의 구체적인 조직·인력 규모 및 운영계획, 정부의 지원 수준 등을 알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4. 제21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, 제24조,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
 5.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
 6. 제20조의5에 따른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·운용
 7.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·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·운용
 8. 상생결제의 관리·운영 및 보급·확산 지원
 9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·위탁하는 사업
- ③ 생략
-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생략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손희정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손희정	02-6788-3750	hjson87@assembly.go.kr